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6

제출년월일 : 1998. 4.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대출의 활성화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보완코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

○ 조례에 기금의 조성년도 및 조성규모와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 (안 제3조, 안 제15조~안 제18조)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보고 규정 신설 (안 제19조)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안 제20조)

□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참고사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입법예고기간 : '98. 3.16 ~ 4. 4.(20일)

○ 입법예고결과 : 이의신청없음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 규정된 자를"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중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약된"을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시장과 시금고 계약을 한"으로 한다.

제3조중 제목"(기금설치 및 재원)"을 "(기금설치 및 조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중소기업의"를 "시장은 중소기업의"로 하며,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2010년까지 총 1,000억원을 조성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호중 "시 일반회계 예산"을 "경기도 및

안산시"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전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중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개발신탁등 수익성예금"을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②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③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
2.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사항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중 "주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하고"를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하며, "중소기업체"를 "업체"로 한다.

제6조중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계획"으로 하며, "게시"를 삭제한다.

제7조중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를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융자대상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중 제목 "(융자대상자 선정)"을 "(융자승인)"로 하고, 제1항중 "융자대상 적격여부를"를 "융자의 타당성 여부를"으로 하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자금"을 "융자금"으로 하며,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를 "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자금"를 "융자금"로 하며, "3%"를 "3.5%"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3조 제2항"를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6항의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보전
3.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변경사항통보) 기금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 기타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중 "시장 또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을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으로 하며,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을 "실태조사를 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기금의 관리·운용상황을 매 분기"를 "월별 관리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24조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융자대상업체를 심외하기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2.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중소기업 대표이사 2인
4. 관내 소재 금융기관의 장 1인
5.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에 식견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1인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시장은 위원중 전출, 퇴직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사항
3.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에 관한사항
4. 융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사항
5.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안건을 기재한 문서로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업진흥계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경제국장
2. 기금출납원 : 공업진흥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안산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약, 융자승인, 융자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주생산품목			
	대 표 자			전화번호			
	자산총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소 재 지	주사무소	안산시 동 번지				
		공 장	안산시 동 번지				
	규 모	대 지 ㎡ 건 평 동 ㎡		상 시 종 업 원	계	사무직	생산직
신청금액	신청금액	백만원		자금용도			
	융자기간	년 개월		입주일자			

사업계획 (개요)

위와 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산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융자지원되는 운전자금등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 (삭제) .....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시장과 시금고 계약을 한 .....
제3조(기금설치 및 재원)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 기금 ..... ②기금은 2010년까지 총 1,000억원을 조성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자금 3. (생략) 4. (생략)	③..... ... 1. 경기도 및 안산시 출연금 2. (삭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시장은 전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개발신탁등 수익성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
②시장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	②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③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 2. 전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사항 4. 위탁수수료에 관한사항 5. 기타 위탁업무에 관한사항
제5조(융자대상업체) 주 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5조(융자대상업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 업체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회 융자실시전에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계획 .....
제7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7조(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융자대상업체가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융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제8조(융자승인) .... 융자의 타당성 여부를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②(삭제) ③(삭제)
제9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내지 3%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이자 보전금 지급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생략) ⑥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⑦(신설)	제9조(융자조건) ①융자금 .... 으로 한다. ②융자금 .... 3.5% ..... . ③..... .... 제3조제2항제3호 .... ④(삭제) ⑤(현행과 같음) ⑥..... ..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추가융자) 시장은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생략)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변경사항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사항통보) 기금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 기타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
제13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 실태조사를 조사하거나 .....
제14조(보고등) ①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상황을 매분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등) ①..... 월별 관리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 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신설)	③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신설)	제1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융자대상업체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2.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중소기업대표이사 2인 4. 관내 소재 금융기관 지점의 장 1인 5.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에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1인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시장은 위원중 전출, 퇴직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신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에 관한 사항 4. 융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제17조(신설)	제1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안건을 기재한 문서로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신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업진흥계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신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설)	제2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경제국장 2. 기금출납원 : 공업진흥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신설)	제21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신설)	제22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안산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신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666

제 출 년 월 일 : 1998. 4 . 29.

제 출 자 : 보사·환경위원장 외 8인

1.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조례 내용중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 위촉대상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수정하며,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규정을 신설함.

2. 수정주요골자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제3항 제5호중 "기탁"을 "기타"로 수정하며,

- 제7조(융자신청)중 "융자금을 받고자"를 "융자금을 융자 받고자"로 수정하고,
- 제9조(융자조건)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며,
- 제12조(변경사항 통보)중 "금융기관에"를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로 수정하고,
- 제1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2항중 "8인의"를 "10인 내외의"로, 제4항 "5호"를 "7호,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에 식견이 있는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자"로 수정하며, 제5호 "관내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하는 1인"과 제6호 "관내 소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하는 1인"을 각각 신설하며,
-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4항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 제21조(회계관리)중 "의"를 "의"로 수정함.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5호중 "기탁"을 "기타"로 한다.

제7조중 "융자금을 받고자"를 "융자금을 융자 받고자"로 한다.

제9조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중 "금융기관에"를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8인의"를 "10인 내외의"로 하고, 제4항 5호를 제7호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에 식견 있는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자"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내 소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하는 1인

6. 관내 소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하는 1인

제1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중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설치및 조성) ①~③(생 략) ③ 시장은 전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③(원안과 같음) ④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생 략) ③(생 략) 1.~4.(생 략) 5. 기탁 위탁업무에 관한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원안과 같음) ③(원안과 같음) 1.~4.(원안과 같음) 5. 기타 .....
제7조(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융자대상 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
제9조(융자조건)①~②(생 략)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①~②(원안과 같음) ③ .... 제3항 .....

원 안	수 정 안
제12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 기타 기업운영에 있어서 중질성 변경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사항 통보)..... ....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
제1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 략) ④(생 략) 1.~4.(생 략) 5.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에 식견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1인	제1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원안과 같음) ② ....10인 내외의 ..... ③(원안과 같음) ④(원안과 같음) 1.~4.(원안과 같음) 5. 관내 소재 기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하는 1인
<신 설>	6. 관내 소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하는 1인
<신 설>	7.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에 식견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자

원 안	수 정 안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③(생 략) <신 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③(원안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 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회계관리)..... .... 외 .....